

특별명예퇴직 관련 퇴직금 수령방법

구분	55세 이상	55세 미만
출생일	~ 1959. 4.30	1959. 5. 1 ~
퇴직 IRP 의무개설	선택 ※ 연금수령 시 계좌개설 필요	필수 ※ 개인이 금융기관 방문 계좌개설
퇴직 IRP 의무 이전 금액	없음	법정퇴직금
즉시인출가능/ IRP 이전 가능	법정퇴직금, 특별명예퇴직금	특별명예퇴직금
연금수령 가능시기	즉시	퇴직 IRP 계좌 유지 후, 만 55세 도달시점
IRP 계좌 이전후 일시금 수령조건	퇴직 IRP 이전 후에도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, 언제든지 수령 가능	
IRP 계좌 이전후 연금수령 조건	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 ※ 연간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지급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IRP 가입 금융기관에 수령조건 확인필요	
IRP 계좌 이전후 부분인출	IRP 이전 후, 이전 금액의 부분인출 불가하며 전액인출만 가능 ※ 부분적 자금 소요 필요 경우는 퇴직 IRP와 급여계좌를 분리입금 요청 - 신청기간 : 4.14 ~ 4.24 - 신청방법 : BIT-ERP>HR>개인업무>급여>퇴직금>특별명예퇴직금 조회」 에서 가능하며, 필요자금을 제외한 퇴직 IRP 이전 금액 입력	

※ 2. 관련법령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)

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※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에서 제17조 제4항을 준용

만55세 이상 (1959년 4.30일 이전 출생)	만55세 미만 (1959년 5. 1일 이후 출생)
퇴직 IRP 또는 급여계좌 중 선택	퇴직 IRP